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 레이와 2년 4월 27일 시점의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지원정책 중에는 레이와 2년도 보정 예산 성립이 전제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생활비와 사업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특별 정액 급부금 (가칭)

기준일 (레이와 2년 4월 27일)에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한은 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P.3

●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육아 세대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아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아동 수당 (원칙 급부)을 수급하는 가구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P.4

● 긴급 소액 자금 · 종합 지원 자금 (생활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비용 등의 대출을 실시합니다.

P.5

● 지속화 급부금 (중소 사업주 · 개인 사업자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넓게 사용할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P.6

● 실질적인 무이자 · 무담보 대출 (사업 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무담보 · 무이자로 용자를 제공합니다.

P.7

●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사회 보험료 외에 국세 및 공공요금 등의 지불 · 납부 유예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8
~10

● 주거 확보 급부금 (임대료)

휴업 등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이직이나 폐업과 비슷한 상황에 이르러 주거를 잃을 위험이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충합니다.

P.11

● 생활 곤궁자 자립 상담 지원 사업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12

● 생활 보호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환경의 정도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13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일을 쉬는 때

● 상병 수당금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쉬었을 경우 휴업 4일째 이후의 소득 보장을 합니다.

P.14

● 휴업 수당

회사가 책임이 있는 이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휴업 수당 (평균 임금의 6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P.15

● 고용 조정 조성금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 활동의 축소를 강요당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휴업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P.16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 등에 따른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용)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 등에 따라 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 (보호자)」 (정규직 · 비정규직을 묻지 않습니다.) 에 대해, 유급 (임금 전액 지급) 휴가를 취득시킨 사업주 (노동 기준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를 제외)에 조성합니다.

P.17

●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지원금 (위탁을 받아 개인으로 일하는 분들 용)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 등에 따라 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위탁을 받아 개인으로 일을 하는 분 (보호자)」 에 대해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원합니다.

P.18

●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이 된 경우,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어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P.19
~20

특별 정액 급부금 (가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간단한 구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계 지원을 하기 위해 1인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 급부 대상자

기준일 (레이와 2년 4월 27일)에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

■ 지급액

급부 대상자 1인당 **10만엔**

■ 수급권자

급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 급부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급부금의 신청은 다음의 (1)과 (2)를 기본으로 하고, 급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실시한다.

※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창구에서 신청 및 지급을 인정한다.

(1) 우편 신청 방식

시구청촌으로부터 수급권자 앞으로 우송된 신청서에 입금처 계좌를 기입하고 입금처 계좌 확인 서류 및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과 함께 시구청촌에 우송

(2) 온라인 신청 방식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가 사용 가능)

마이내 포털 (マイナポータル) 에서 입금처 계좌를 입력한 후, 입금처 계좌의 확인 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 신청 (전자 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 함, 본인 확인 서류는 불필요)

■ 신청 접수 및 지급 개시일

시구청촌에서 결정 (긴급 경제 대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한다)

신청 기한은 우편 신청 방식의 **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급부금의 구체적인 수속 절차는 총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를 설치하여 문의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03-5638-5855

접수 시간 : 9 : 00~18 : 30 (주말 공휴일 제외)



레이와 2년도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아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중의 하나로 아동 수당 (원칙 급부)을 수급하는 가구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레이와 2년 4월분 (3월분 포함)의 아동 수당 (원칙 급부)의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대상 아동은 레이와 2년 3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고 레이와 2년 3월까지 중학생이었던 아동 (신 고등 1학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급액

대상 아동 1인당 **1만엔**

레이와 2년 3월 31일 시점에서의 거주 시정촌에서 지급됩니다.

※ 신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해 레이와 2년 2월 29일 시점에서의 거주 시정촌에서 지급됩니다.

※ 레이와 2년 4월 1일 이후 이사하신 분은 전출하신 원래의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절차

원칙적으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레이와 2년 3월 31일 시점에서의 거주 시정촌에서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은 소속 청이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한 후 본인이 거주 시정촌에 신청하십시오.



● 문의처

레이와 2년 3월 31일 시점 (신 고등학교 1 학년생에 대해서는 레이와 2년 2월 29일 시점)의 거주 시정촌의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창구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내각부 육아 세대에 임시 특별 급부금 콜센터 (5월초부터))

긴급 소액 자금 · 종합 지원 자금 (생활비)

각 도도부현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휴업이나 실업 등으로 생활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례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소액 자금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하신 분 [주로 휴업하신 분])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소액의 비용을 대출합니다.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휴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있고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있으면 휴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액 학교의 휴강 등의 원인으로 휴업, 개인 사업자 등의 특례의 경우 20만엔 이내. 기타의 경우 10만엔 이내

원금 상환하지 않는 기간 1년 이내

상환 기한 2년 이내 **대출이자 · 보증인** 무이자 · 불필요

종합 지원 자금 (생활의 재건이 필요한 분 [주로 실업하신 분 등])

생활이 재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 대출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수입 감소와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일상 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있으면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액 (2인 이상) 월 20만엔 이내
 (싱글) 월 15만엔 이내 (대출 기간 : 원칙 3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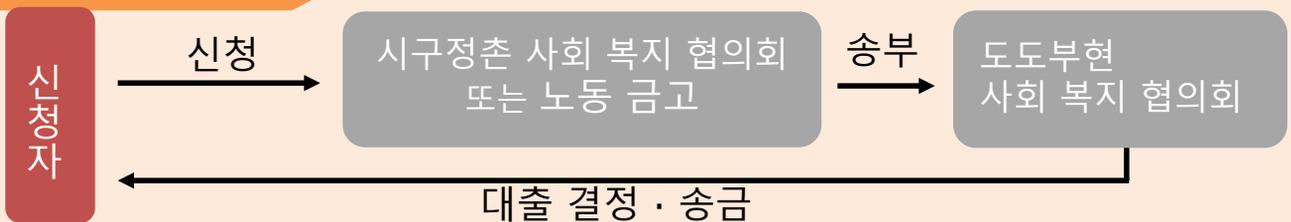
원금 상환하지 않는 기간 1년 이내

상환 기한 10년 이내 **대출이자 · 보증인** 무이자 · 불필요

※ 1 이번 특례 조치는 새롭게 상환시에 소득의 감소가 계속 되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우선, 긴급 소액 자금으로 최대 20만엔을 대출하고, 또한 수입 감소가 지속될 경우 등에는 종합 지원 자금으로 2인 가구 이상 인 경우 최대 20만엔을 3개월 대출하는 것으로 대응.
 (최대 80만엔)

대출 수속의 흐름



- 일반적인 문의는 **상담 콜센터**
0120-46-1999 ※ 9:00~21:00 (주말 공휴일 포함)
- 신청은 **거주지의 시구청촌 사회 복지 협의회 또는 노동 금고**
※ 우편으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많은 도도부현 · 지정 도시 사업의 HP에는 "링크집" 또는 "시정촌 · 구 사협회 일람 (명부)"로 시구청촌 사업 HP를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QR 코드로 확인해주시요. 게재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지속화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넓게 사용할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급부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자※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 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를 널리 대상으로합니다.
또한 의료 법인, 농업 법인, NPO 법인, 사회 복지 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상이 됩니다.

■ 지급액

법인은 **200만엔**, 개인 사업자는 **100만엔**
(그러나 전년도 1년간 매출의 감소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매출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법

전년도 총 매출 (사업 수입) -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액 50 % 감소 × 12 개월)

※상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해 창업한 분 등에 맞는 대응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i ● 문의처

중소기업 금융 · 급부금 상담 창구 0570-783183

※평일 · 주말 공휴일 9시00분~17시00분

또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입니다 만, 신청 · 지급 개시시기 및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방식을 경제 산업 성 HP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URL 혹은 오른쪽의 QR 코드로 확인해주시시오.

<https://www.meti.go.jp/covid-19/pdf/kyufukin.pdf>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①

후생 연금 보험료 등의 유예 제도

1. 환가의 유예

후생 연금 보험료 등을 일시에 납부하여 사업의 지속 등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연금 사무소에 신청하여 환가의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납부 유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후생 연금 보험료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연금 사무소를 통해 지방 후생 (지) 국장에 신청하여 납부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있거나 도난당한 것
- ② 사업주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 한 것
- ③ 사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정지한 것
- ④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1. 환가의 유예」 또는 「2. 납부 유예」가 인정되면

- ◆ 유예 된 금액을 유예 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재산 압류 및 환가 (매각 등 현금화)가 유예됩니다.
- ◆ 유예 기간중의 연체료가 일부 면제됩니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연금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연금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 건강 보험료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협회 겐포(協会けんぽ) 가입의 경우 연금 사무소, 건강 보험 조합 가입의 경우 건강 보험 조합앞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가장 가까운 연금 사무소 (이하 URL 혹은 오른쪽의 QR 코드)

<https://www.nenkin.go.jp/section/soudan/index.html>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및 개호 보험의 보험료 (세금)의 감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진 분들 등에 대하여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및 개호 보험의 보험료 (세금)의 감면 또는 징수 유예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시구청촌 연금 사무소 또는 국민 건강 보험 조합에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 국민 건강 보험료 (세금)에 대해

⇒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국민 건강 보험 담당과
(국민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되어 있는 조합)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보험료에 대해

⇒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후기 고령자 의료 담당과

○ 개호 보험료에 대해

⇒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개호 보험 담당과

○ 국민 연금 보험료에 대해

⇒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국민 연금 담당과 또는 연금 사무소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②

국세의 납부 유예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환가의 유예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유예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세무서에서 소정의 심사를 조기에 실시합니다.

[개별 사정]

- ① 재해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②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경우
- ③ 사업을 폐지하거나 정지한 경우
- ④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가 인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1년간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유예 기간 동안의 연체 세금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 재산 압류 및 환가(매각)이 유예됩니다.



● 문의처

국세청 (다음 URL 혹은 오른쪽의 QR 코드)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지방세 유예 제도

1. 징수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납세자 (가족 포함)가 병에 걸리신 경우 외에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는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시, 유예 제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

- ① 재해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②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경우
- ③ 사업을 폐지하거나 정지한 경우
- ④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신청에 의한 환가의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방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에 의한 환가의 유예 제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징수 유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 문의는 거주하시는
도도부현 · 시구정촌에 부탁드립니다.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③

전기·가스 요금의 지불 유예 등에 대하여

개인 또는 기업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전기·가스 요금의 지불이 어려우신 분에 대하여,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 미납에 의한 공급 중단 유예 등, 전기·가스 요금의 지불 유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전기·가스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전기·가스 요금 외, 수도·하수도, NHK, 고정 전화·휴대 전화 사용료 및 공영 주택의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유예 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 문의처

전기·가스 요금 지불로 곤란하신 분은 먼저 계약되어 있는 전기·가스 사업자에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대응 사업자 목록 (대응 예정 포함)

https://www.enecho.meti.go.jp/coronavirus/pdf/list_electric.pdf

가스 요금에 대한 대응 사업자 목록 (대응 예정 포함)

https://www.enecho.meti.go.jp/coronavirus/pdf/list_gas.pdf



주거 확보 급부금 (임대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등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이직이나 폐업에 이르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이르러 주거를 잃을 위험이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충합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 대상 (현행)

- 이직 · 폐업 후 2년 이내의 분

확대 후

- 이직 · 폐업 후 2년 이내의 분
- 급여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유와 해당 개인의 사정에 의하지 않고 감소하여 이직이나 폐업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



대상자 이직 · 폐업해서 2년 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이직 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

지급 기간 원칙 3개월 (구직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 (최장 9개월까지))

지급액 (도쿄도 특별구 기준) 단신 세대 : 53,700엔, 2인 가구 : 64,000엔, 3인 가구 : 69,800엔

지급 요건

- 수입 요건 : 가구 소득 합계액이 시정촌민세 균등할 비과세되는 소득 금액의 1/12 + 월세 금액 (주택 부조 특별 기준액이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도쿄도 특별구 기준) 단신 세대: 13.8만엔, 2인 가구:19.4만엔, 3인 가구:24.1만엔
 - 자산 요구 사항 : 가구 예금의 합계액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 10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도쿄도 특별구 기준) 단신 세대 : 50.4만엔, 2인 가구 : 78만엔, 3인 가구 : 100만엔
 - 구직 활동 등 요구 사항 : 성실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 것
※ 신청시의 헬로우 워크에 구직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4월 30일 ~)
- } 등

i

- 문의처 · 신청은
해당 시정촌의 자립 상담 지원 기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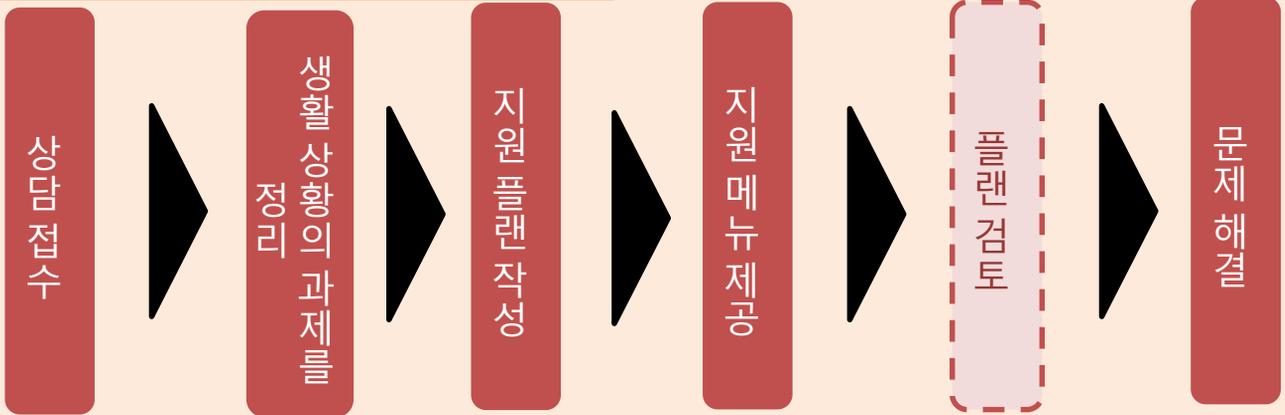
전국 연락처 목록 <https://www.mhlw.go.jp/content/000614516.pdf>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순서(자립상담 지원사업)



지원메뉴의 예

구직 지원 · 구직준비 지원

- 구직에 관한 조언이나 개별 구인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 또는, 일하는데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서투르실 경우, 워크숍이나 구직체험의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 개선 지원

- 가계 상황을 투명화하여, 가계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출 알선 등을 실시합니다.
- 또는, 임대, 세금, 공공요금 등의 체납이나 각종 급부 제도 등의 이용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보장 급부금

- 이직 등에 의한 경제적인 곤궁으로, 주택을 잃은 분, 그럴 위험성이 있는 분, 구직활동 등을 조건으로, 임대비용을 유기로 급부합니다.

일시 생활지원

- 주택을 잃은 분에게, 일정기간, 의식주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은 해당 시정촌과 자립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창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보호 제도

생활 보호는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생활보호는, 자산, 능력 등 모든것을 활용 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 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중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부동산,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하고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 연금, 수당 등 사회 보장 급부 혜택의 활용을 해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은 우선으로 보호된다.
※보호 신청을 한 경우, 부부, 중학교 3 학년 이하의 아이의 부모는 중점적인 조사 대상으로 복지 사무소의 경우, 케이스워커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나 부양할 수 없는 지를 조회합니다. 기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회합니다.
 - ※필요한 생활비는 나이, 가구 인원수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 (최저 생활비) ,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생활 보호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최 저 생 활 비

연금 · 아동부양 수당 등의 소득

→ 지급 되는 보호비

-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의 판단은 상기 외에 섬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수속 절차

- 거주하시는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 (생활 상담 등의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보호 신청을 한 경우, 복지 사무소는 방문 조사,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 보호비 결정을 위한 심사를 합니다.
- 위의 심사를 실시해, 복지 사무소는 보호 신청에서 원칙 14 일 이내에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생활 보호 수급 개시 후

- 생활 보호 수급 중은 케이스워커가 일년에 몇 번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케이스워커의 생활에 관한 지도에 따라 필요가 있습니다.
- 생활 보호 수급 중에는 소득 상황을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생활비 외에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액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또한 필요한 의료, 간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가게 상담 지원, 자녀의 학습 · 생활 지원, 취업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체를 제외).



● 상담은 해당 지방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수당금

상병 수당금은,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업무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쉬는 경우, 소득 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어, 요양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각 증상은 없으나 검사 결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 판정을 받아 입원하고 있다.
- 발열 등의 자각 증상이 있어 요양을 위해 일을 쉬고 있을 시에도 상병 수당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급됩니다.

- ① 업무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할 수 없다.
※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보험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 ② 4일 이상 일을 쉬고 있다.
※ 요양을 위해 연속 3 일 휴식 후(대기 기간),
4 일 이후부터의 휴무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 대기 기간 동안에는 유급 휴가, 토 일 공휴일 등의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지급기간

지급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간

※ 1년 6개월 사이에 상병 수당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하루 지급액

상병 수당금의 지급 개시일이 속하는 달 이전의 최근 12개월간의 표준 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30 분의 1의 액수의 3 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

※ 지급된 급여의 금액이 상병 수당금의 지급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병 수당금과 지불된 급여의 금액 차액이 지급됩니다.

$$\text{지급총액} = \left(\frac{\text{최근 12 개월 동안의 표준 보수 월액의 평균액의 30 분의 1}}{\text{3 분의 2}} \right) \times \text{지급 기간}$$

-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가입 건강 보험의 보험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시구정촌에서는 규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피고용자에 상병 수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계시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휴업 수당 (노동 기준법 제 26 조)

노동 기준법 제 26 조에서 회사는, 회사에 책임이 있는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 시켰을 경우,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노동 기준법의 의무에 관계없이 고용 조정 조성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업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용 조정 조성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업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란

-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 ▶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회사에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입니다.

- ①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일 때
- ② 사업주가 통상의 경영자로서의 최대의 주의를 다해도 여전히 피할수 없는 사고일 때

①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 비상사태 선언에 의거한 요청과 같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②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는 휴업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최대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 자택 근무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 근로자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시켰는지
- 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 만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으로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것은 아닙니다.

휴업 수당액

평균 임금 (휴업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임금이 시급제나 일급제, 능률급 등의 경우, 최저 보장액의 규정이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에 관해서는
특별 노동 상담 창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른 해고, 계약해지, 휴업수당 등 노동상담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고용 조정 조성금 (특례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어쩔수 없이 사업 활동의 축소를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시 휴업, 교육 훈련 또는 파견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도모한 경우에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자 (사업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사업주

특례 조치 ※ 밑줄 부분은 레이와 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조성 내용 ·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

※ 레이와 2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2년 6월 30일까지 휴업 등에 적용

- ① 휴업 수당에 대한 조성 비율을 인상 (중소기업 4/5, 대기업 2/3)
해고 등을 하지 않으면 조성 비율 가산 (중소기업 9/10, 대기업 3/4)

※ 대상 근로자 1인 1일당 8,330엔을 상한 (레이와 2년 3월 1일 현재)

- ② 교육 훈련을 실시했을 경우의 가산액 인상
(중소기업 2,400엔, 대기업 1,800엔)
- ③ 신규 졸업자 등 고용 보험 피보험자로 지속되어 고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노동자도 조성 대상
- ④ 1년에 100일의 지급 한도 일수와는 별도 기준으로 이용 가능
- ⑤ 고용 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노동자의 휴업도 대상

○ 수급 요건의 추가 완화

※ 휴업 등의 첫날은 레이와 2년 1월 24일 이후의 것으로 소급 적용

- ⑥ 생산 지표의 요건을 완화 (대상 기간의 첫날이 레이와 2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2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는 5% 감소)
- ⑦ 최근 3개월의 고용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 있을시에도 조성 대상
- ⑧ 고용 조정 조성금의 연속적인 사용을 불가하는 요구 사항 (냉각 기간)을 철폐
- ⑨ 사업소 설치 후 1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완화
- ⑩ 휴업 규모의 요건을 완화

○ 활용의 용이성

※ 휴업 등의 첫날이 레이와 2년 1월 24일부터 레이와 2년 7월 23일까지의 경우에 적용

- ⑪ 사후 제출을 가능하게 제출 기간 레이와 2년 6월 30일까지 연장
- ⑫ 단시간 일제휴업의 요건을 완화
- ⑬ 잔업 상쇄 제도를 당면 중단
- ⑭ 신청 서류의 대폭적인 간소화

※ 앞으로 한층더 특례조치를 실시 할 예정 입니다.



● **지급 요건의 상세 내용과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에서 고용 조정 조성금에 관한 문의에 대응합니다.

0120-60-3999 (접수시간 9:00~21:00 (토일·공휴일포함))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 등을 한 경우, 해당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인 노동자의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비정규를 불문하고 유급 휴가 (노동기준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를 제외.)를 취득시킨 기업을 조성합니다.

■ 대상자 (기업주)

① 또는 ②종의 아이가 보호자를 필요로 할때 보호자가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기준 법상 연차 유급 휴가와는 별도로 유급 (임금 전액 지급)의 휴가를 시킨 사업주.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으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임시 휴업한 초등학교 등 (※)에 다니는 어린이
※ 초등학교 등 : 초등학교, 의무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각종 학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한정), 특별 지원 학교 (모든 부), 방과후 아동 클럽,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유치원, 보육원, 인증된 어린이집, 인가 외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사업 등 아동의 임시 위탁 등을 실시하는 사업, 장애아의 통소를 지원하는 시설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등, 초등학교 등을 쉴 필요가 있는 아이

■ 지급액

유급 휴가를 얻은 대상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 × 10 / 10
※ 지급 상한은 1 일 당 8,330 엔

■ 적용일

레이와 2년 2월 27일 ~ 6월 30일 이내 취득한 유급 휴가
※ 봄 방학 등 학교가 개교 할 예정이 없었던 날 등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간

레이와 2년 9월 30일까지
※ 사업주에 분들께서 가능한 자료 정리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휴가 지원](#)

[검색](#)

● 문의사항에 관하여
[학교 등 휴업 조성금 · 지원금 고용 조정 조성금 콜센터](#)

0120-60-3999

접수시간 : 9 : 00 ~ 21 : 00 (토일 · 공휴일포함)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지원금 (위탁을 받아 개인 일을 하시는 분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 등을 한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계약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개인으로 일을 하시는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위탁 받아서 개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① 또는 ②의 자녀의 양육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보호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으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임시 휴업을 한 초등학교 등 (※)에 다니는 어린이

※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의무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각종 학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한함), 특별 지원 학교 (모든 부), 방과후 아동 클럽,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유치원, 탁아소, 인정 어린이 원, 인가 외 보육 시설, 가정 보육 사업 등 아동의 임시 보관 등을 실시하는 사업, 장애아 통소 지원하는 시설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등, 초등학교 등을 **실** 필요가 있는 어린이

일정한 요건

- 개인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던 경우
- 업무 위탁 계약 등에 의거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업무 내용, 업무 수행 장소·일시 등에 대해 일정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

■ 지급액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해, 1일 4,100 엔 (정액)

■ 적용일

레이와 2년 2월 27일 ~ 6월 30일

※봄 방학 등 학교가 개교 할 예정이 없었던 날 등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간

레이와 2년 9월 30일까지

i

●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관하여
학교 등 휴업 조성금·지원금, 고용 조정 조성금 콜센터
0120-60-3999

접수시간 : 9 : 00 ~ 21 : 00 (토일·공휴일포함)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

(특례조치 : 기업에 종사하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 기업에서 일하는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 대상자

이하의①~③에 해당되는 분이 특례조치의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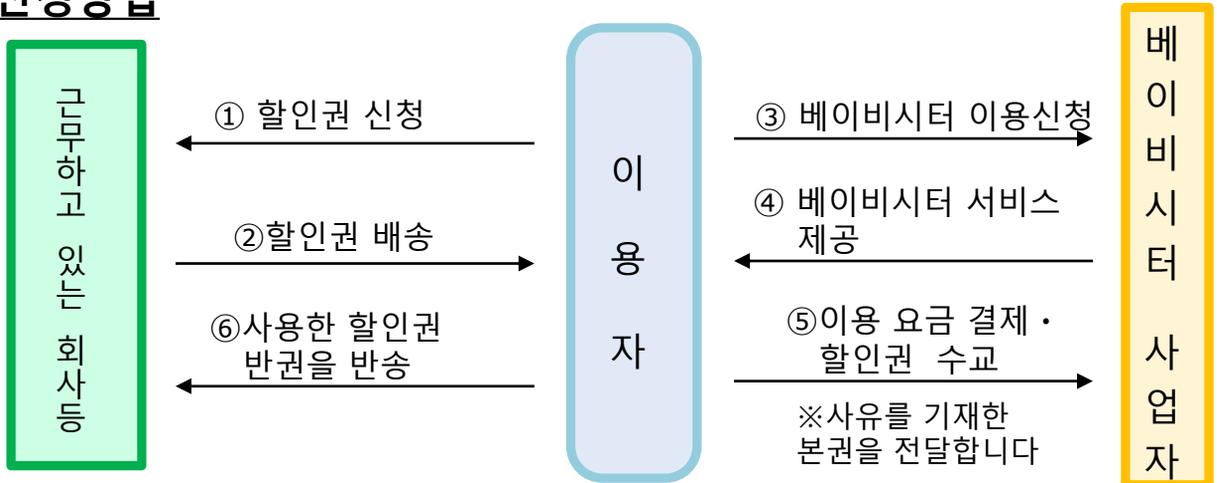
- ① 민간 기업 등에 근무
- ②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양육을 하고 있을때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다.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보육원 등이 휴교·휴원 등으로 되어 있다.

■ 특례 조치의 내용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등이 임시 휴교·휴원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2,200 엔 / 장)을 지급합니다.

| | <평소> | ⇒ | <특례 조치> |
|-------------|------------|---|---------|
| • 1 일 최대 장수 | : 1 장/인 | ⇒ | 5 장/인 |
| • 1 달 최대 장수 | : 24 장/가정 | ⇒ | 120장/가정 |
| • 연간 최대 장수 | : 280 장/가정 | ⇒ | 제한 없음 |

■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csa.jp/>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사업자 이용자 지원 사업

(특례조치 : 개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 개인으로 일하는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이하의①~③에 해당되는 분이 특례조치의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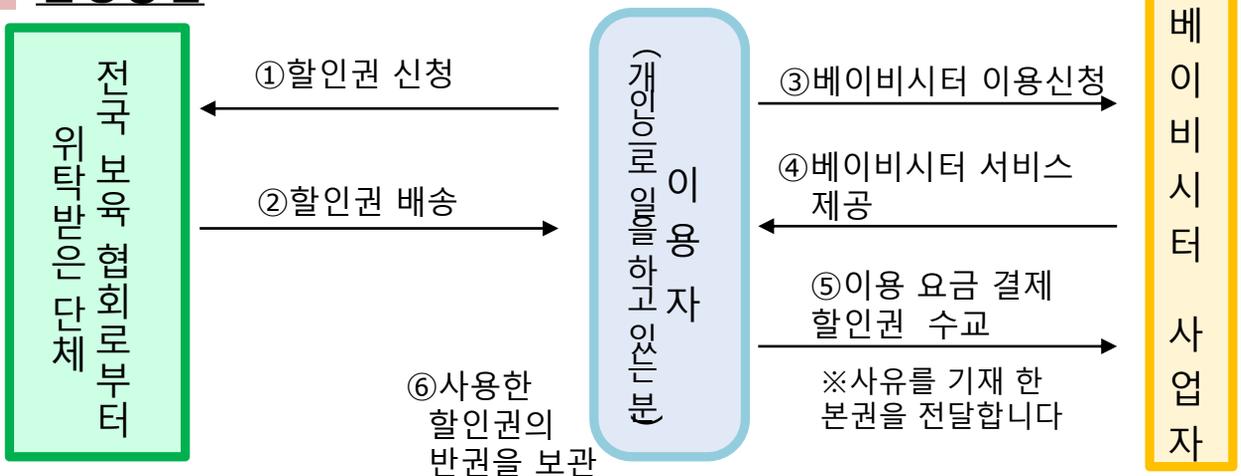
- ①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자영업, 프리랜서 등).
- ②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양육을 하고 있을 때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다.
- ③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보육원 등의 휴교·휴원하게 되었다.

특례조치 내용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등이 임시 휴교·휴원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2,200 엔 / 장)을 지급합니다.

| | <평소> | <특례 조치> |
|-------------|-------------|---------|
| • 1 일 최대 장수 | : 1 장/인 ⇒ | 5 장/인 |
| • 1 달 최대 장수 | : 24장/가정 ⇒ | 120장/가정 |
| • 연간 최대 장수 | : 280장/가정 ⇒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csa.jp/>



상담 창구 일람

여러분 한분 한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헬로 워크** 【TEL : 가장 가까운 헬로 워크로 전화 주십시오】

일을 찾는 분은 가까운 헬로 워크에 상담해 주십시오. 채용 정보는, 헬로 워크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소개 등은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소하신 분들중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지원 제도 안내 등 필요한 상담도 받아 들입니다.



노동 문제 (해고·고용 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 **특별 노동 상담 창구 등** 【TEL : 가장 가까운 창구로 전화 주십시오】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특별 노동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른 해고·채용중지·휴업 수당 등의 노동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정 취소와 입직시기 연기가 된 여러분을 위해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 워크에 「신규 졸업자 내정 취소 등 특별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시지않고 전화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심리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정신보건 복지 센터 등** 【TEL : 가장 가까운 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보건사·정신보건 복지사등의 전문직이, 면접이나 전화로, 코로나에 대해 불안을 느껴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이의 양육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등의 고민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일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포털 사이트 「고코로노 미미」**

직장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카운셀러 등의 메일이나 전화로 인한 정신 건강 부조, 과로에 의한 컨디션 저하 등의 건강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DV 및 육아의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 **DV 상담 네비** 【TEL:0570-0-55210】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DV) 고민에 대해 해당 지역의 상담 창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괴롭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경우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십시오.

● **아동 상담소·아동 상담소 학대 대응 다이얼**

【TEL : 가장 가까운 아동 상담소 혹은 아동 상담소 학대 대응 전화 「189」 로 전화주십시오】

육아의 고민이나 학대 상담 등에 대해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실 때 등의 여러가지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 **요리소이 핫라인 등 (전화로의 상담)** 【TEL:0120-279-338】

어떠한 분의, 어떠한 고민도 곁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습니다.

(상담 예)

- 생활의 고민·고민을 들어 주길 바라시는 분, DV·성폭력 등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 외국어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SNS 등으로 상담**

LINE, Twitter, Facebook 등의 SNS나 전화를 통해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사는데 괴로움을 느낀다」 등의 고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